

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가이드라인

◇ **채용비리 피해자** : 부정행위로 인하여 다음 채용단계 응시기회 제약을 받는 자

① 피해자 특정 여부 판단 및 시험 기회 부여

■ (피해자 특정 가능 시) 해당 직접 피해자에게 피해 발생 단계 바로 다음 채용 단계 재응시 기회 부여

* 예: 면접 결과 합격대상자로 포함되었으나, 점수 조작 등으로 최종 탈락한 경우

- 최종 면접단계 피해 → 해당 피해자 즉시 채용
- 필기 단계 피해 → 해당 피해자 면접 응시 기회 부여
- 서류 단계 피해 → 해당 피해자 필기 응시 기회 부여

■ (피해자 특정 불가 시) 피해자 그룹으로 특정이 가능한 피해자그룹을 대상으로 부정행위 발생단계부터 제한경쟁채용 실시

* 예: 부정채용 사실 자체는 확인되었으나, 응시자 개인별 피해여부에 대한 직접적 인과관계 확인이 곤란하여 구체적인 피해자 특정이 곤란한 경우

- 최종 면접단계 피해 → 피해자 그룹 면접 재 실시
- 필기 단계 피해 → 피해자 그룹 필기시험 재 실시
- 서류 단계 피해 → 피해자 그룹 서류시험 재 실시

* 단, 단계별 피해자 구분이 어려운 경우 서류시험 재 실시

② 부정합격자 확정·퇴출 前이라도 우선 시행

■ 필요시 한시적으로 정원 외 인력으로 허용

노원어르신행복주식회사